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3월 01일 20시 49분



목차

목차	2
취득 등록면허세	3
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(제7조 제1항 관련)	3
자동차의 신규등록	3
자동차의 이전등록(시·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)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▪ 취득세 ▪ 지역개발공채

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(제7조 제1항 관련)

🔗 자동차의 신규등록

매입대상		매입기준
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	① 1,000cc 이상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
	② 1,600cc 초과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8
	③ 2,000cc 초과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2
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(1,000cc 이상)	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
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(1,000cc 이상)	① 0.6톤 미만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.5
	② 0.6톤 이상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
라. 영업용 승용자동차(1,000cc 이상)	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
마. 영업용 승합자동차(1,000cc 이상)	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
바.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(1,000cc 이상)	① 0.6톤 미만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.5
	② 0.6톤 이상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

🔗 자동차의 이전등록(시·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)

매입대상		매입기준
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	① 1,000cc 이상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
	② 1,600cc 초과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
	③ 2,000cc 초과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
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(1,000cc 이상)	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.5
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(1,000cc 이상)	① 0.6톤 미만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.75
	② 0.6톤 이상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.5
라. 영업용 승용자동차(1,000cc 이상)	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

마. 영업용 승합자동차(1,000cc 이상)	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.5
바.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(1,000cc 이상)	① 0.6톤 미만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.25
	② 0.6톤 이상	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.5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